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(內)事(件)

## 實用新案登錄無効

<大法院 第2部 判決>(1980. 12. 23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김 용 철

關與法官: 한 환 진 · 김 기 흥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변영구(충남 공주군반포면 봉곡리 464)
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: 이종호(부산 동래구 수정동 453)

3. 原 審 決: 特許廳 1980. 7. 26字, 1978年 抗告審判 第153號 審決

4. 主 文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### 5. 理 由

被審判請求人 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上告理由 第2點에 대하여,

原審決이 그 判示事實을 認定함에 使用한 證據中에는 公文書이므로 眞正成立이 推定되는 甲第7號證, 公證된 文書이므로 眞正成立이 推定되는 甲第3號證, 被審判請求人이 그 署名捺印을 認定하고 있는 甲第1號證이 包含되어 있고 위 證據能力있는 書證의 各記載와 辯論의 全趣旨를 綜合하면 原審決의 事實認定은 넉넉히 公認되는 바이므로 거기에 論旨가 指摘하는 바와 같은 證據判斷을 그르치거나 審理未盡으로 인한 理由不備등의 違法事由가 있다 할 수 없다.

上告理由第1點에 대하여,

記錄에 의하면 原審이 被審判請求人은 이 件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考案者가 아니라고 認定한 措

置는 正當하다고 公認되고 被審判請求人은 原審에서 이 件 實用新案의 眞正한 考案者로부터 承繼받은 者라고 主張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그에대한 立證도 없는 바이므로 原審이 이 件 登錄考案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者가 考案者로서 出願하여 登錄된 것으로서 實用新案法 第2條, 同第19條 第1項 第1號에 의하여 그 登錄이 無效임을 면할 수 없다고 判斷한 措處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. 論旨는 모두 理由없다.

이에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### — 參 考 —

抗告審判

1978年 抗告審判(당) 第153號

抗告審判請求人: 이 종 호

被抗告審判請求人: 변 영 구  
위 當事者間의 1977年 審判 第167號(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)의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: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

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### 審 決

1977年 審判 第167號

審判請求人: 변 영 구

被審判請求人: 이 종 호

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: 本件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은 그 登錄을 無效로 한다.

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